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23. 5. 25 선고 2022가단56774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 고 주식회사 A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규일

피 고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예일중앙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이경수

변 론 종 결 2023. 4. 20.

판 결 선 고 2023. 5. 25.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와 C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21. 9. 15.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피고는 C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21. 9. 15. 접수 제94842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이 유

1. 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C에 대하여 47,079,980원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채권 내지 손해배상채권을 가지고 있는데, C가 2021. 9. 15. 피고에게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증여(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하고,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21. 9. 15. 접수 제94842호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를 경료해 주었는바, 이 사건 계약은 원고를 비롯한 C의 일반 채권자들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는 위 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으로서 C에게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나. 판단

원고의 주장은 원고가 C의 채권자임을 전제로 하고 있으므로 이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가 제출한 갑 제1호증의 1 내지 5(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등기사항전부증명서)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와 반대사실을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문현정

별지

목 록

- 1동의 건물의 표시

대구광역시 달성군 아파트 동

[도로명 주소]

대구광역시 달성군

철근콘크리트조

슬래브지붕 5층

아파트

1층 728.8㎡

2층 728.8㎡

3층 728.8㎡

4층 728.8㎡

5층 728.8㎡

-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

대구광역시 달성군

대 13082.4㎡

- 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

철근콘크리트조

83.90㎡ 끝.

